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3-05-03

광 주 고 등 법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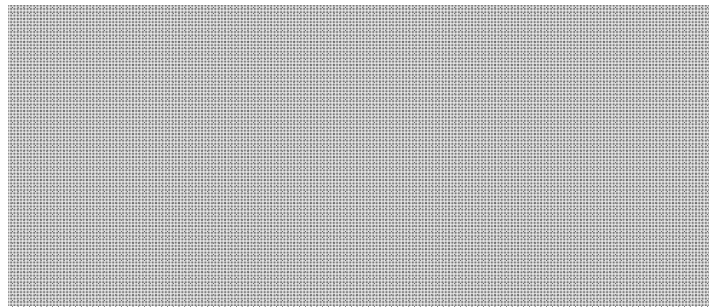
제 주 부

판 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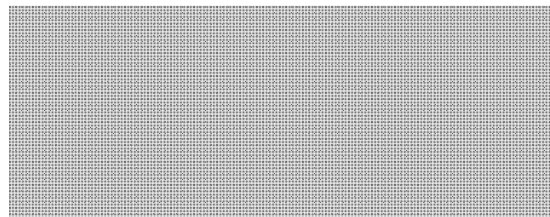
사 건 (제주)2003나1016(본소) 채무부존재확인

(제주)2003나1023(반소) 손해배상(자)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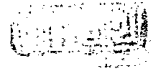
제1심 판결 제주지방법원 2003. 6. 12. 선고 2003가합116(본소),

2003가합1034(반소) 판결

변론종결 2003. 10. 17.

판결선고 2003. 11.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대항소비용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 소

1996. 12. 7. 04:00경 제주 남제주군 성산읍 소재 성산 내항 우도도항선 선착장 앞에서 [REDACTED] 그랜저 승용차가 바다에 추락하여 탑승자인 소외 망 [REDACTED] 이 사망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반 소

원고는 피고에게 200,677,273원 및 이에 대한 1996. 12. 7.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며,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의 반소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27,067,726원 및 이에 대한 1996. 12. 7.부터 당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채택 증거】 갑1, 2호증의 각 2, 을나1 내지 3, 6호증, 을나4호증의 1 내지 20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제주도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결과, 변론의 전취지

(1) 소외 망 [redacted] (다음부터 '소외인'이라고만 한다)은 제주 [redacted] 고성리 소재 ' [redacted] ' 룸살롱을 경영하던 자로서, 1996. 12. 7. 새벽에 영업을 마치고 같은 리 소재 ' [redacted] ' 단란주점에서 위 룸살롱의 마담인 소외 망 [redacted] (다음부터 '망인'이라고만 한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04: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맥주와 안주를 가지고 바다에 가 술을 더 마시겠다면서 위 단란주점을 나와 그 소유의 [redacted] [redacted]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에 망인을 태우고 간 뒤로 망인과 함께 행방불명되었다.

(2) 그 후 위 승용차는 2002. 9. 12. 09:40경 제주 남제주군 성산읍 성산리 소재 성산항 우도도항선 선착장 앞 바다의 수심 약 5m 지점에서 수중침전폐기물정화작업을 하던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직원 [redacted] 에 의하여 발견, 인양되었고, 위 승용차 안에는 이미 오래 전에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유골 상태의 변사체 2구가 서로 엉



켜진 채로 있었는데, 이들에 대한 소지품 확인 및 유전자감식 결과, 소외인과 망인으로 밝혀졌고, 부검 의사는 유골의 골수조직에서 플랑크톤이 검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각각 사인을 소외인에 대하여는 '익사', 망인에 대하여는 '사인불명'이라는 추정 소견을 밝힌 바 있다.

(3) 위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은 우도도항선 선착장 앞의 도로로서 도항선에 차량을 싣고 내리기 위하여 바다쪽으로 20° 가량 경사져 있었고, 소외인과 망인이 실종된 1996. 12. 7. 당시는 인근 바다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데다가, 추운 날씨에 눈이 내려 도로가 결빙되어 있었고, 한편 위 승용차의 내부검사 결과, 위 승용차는 시동이 걸린 채 핸드 브레이크가 올려지고 변속기어는 중립 위치에 놓여 있었으며 전조등이 켜진 상태에서 바다로 추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 한편, 소외인의 처나 그와 가까이 지내던 친지들은 소외인에 대하여 평소 술에 취하게 되면 차를 몰고 바닷가에 가서 술을 더 마시거나 바람을 쐬다가 귀가하곤 하는 습관이 있었고, 망인과는 단순한 룸살롱 업주와 종업원의 관계이었을 것이며, 이 사건 사고 무렵 위 룸살롱의 운영이 다소 어려웠다는 점 외에 달리 소외인이 자살할 만한 특별한 동기도 없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으며, 또 당시 소외인은 제1종 보통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던 반면, 망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아예 받지 못하였던 처지이었다.

(5) 원고는 1996. 6. 21.경 소외인과 사이에 위 승용차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1996. 6. 21.부터 1997. 6. 21.까지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1남 2녀 중 차녀인 망인의 어머니로서, 망인의 아버지인 소외 망인 이 2002. 6. 7. 사망하자, 2003. 4. 12.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거쳐 위



의 재산을 단독 상속한 바 있다.

나. 책임의 근거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승용차의 실제 운전자, 망인의 사망시기 및 사인이 모두 불명인 상태이어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본소로써 그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소외인의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보험자인 원고는 소외인의 행위로 인하여 망인과 피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반소로써 그 손해배상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 단

그러므로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망인을 탑승시키고 위 선착장에 가서 차량의 시동을 켜 상태로 정차시킨 후 위 승용차 안에서 바람을 쐬고 있던 중, 위 승용차가 경사지고 결빙된 도로에서 미끄러져 바다로 추락함으로써 말미암아 망인이 사망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소외인은 자기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위 승용차의 운행으로 인한 이 사건 사고에 의하여 그 승객인 망인과 그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겠으므로, 소외인의 보험자인 원고는 상법 제726조의2에 따라 직접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피고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책임의 제한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본 바에 의하면 망인은, 소외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심야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바닷가 선착장으로 가서 술을 더 마시려고 지형 자체가 20° 정도 바다쪽으로 경사져 있고 노면이 결빙되어 미끄럽기까지 한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에 위 승용차를 정차시킨 것을 알면서도, 소외인의 계속되는 음주를 만류하거나 안전한 다른 곳에 정차시키도록 하지 않고 방치한 잘못이 있다 하겠고, 이러한 망인의 과실은, 바다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함부로 차량을 정차시키고 술에 취한 나머지 도로에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뒤늦게 대처함으로써 추운 겨울날 바다로 추락하여 망인을 사망하게 한 소외인의 잘못과 아울러,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 하겠으므로, 원고가 보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망인의 책임비율은 위 인정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사고지점 주변 도로현황 및 당시의 일기, 망인의 주취상태, 망인과의 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40%로 정함이 상당하다(따라서 피고의 책임비율은 60%로 한정되고, 책임제한 비율이 낮거나 높다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여자

생년월일 : [REDACTED] 생

연령 : 사고 당시 29세 5월 남짓

기대여명 : 51.29년 정도

(나) 직업 및 소득실태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름살롱의 마담으로 종사하고 있었는데, 노동부 발행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1996년도 여성 대인 및 보호서비스 근로자(전



경력)의 월 급여는 905,872원(= 월 급여 743,277원 + 연간 특별급여 1,951,144원 x 1/12)이고, 2000년도의 여성 대인서비스 관련 종사자(전경력)의 월 급여는 1,028,033원(= 월 급여 883,983원 + 연간 특별급여 1,728,607원 x 1/12)이며, 한편 2002년 하반기 성인 여자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은 1일 45,031원이고, 이는 그 후로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다) 가동기간 및 가동일수

룸살롱 마담으로서의 가동기간은 50세가 끝날 때까지, 도시보통인부로서의 가동기간은 60세가 될 때까지 매월 22일씩

(라) 생계비 : 수입의 1/3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나4호증의 5, 을나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경험칙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읍지역에 소재하는 룸살롱의 마담으로 종사하였을 뿐이므로, 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여성 대인서비스 관련 종사자의 소득을 기초로 할 수 없고, 오히려 성인 여자의 농촌일용노임에 의하여 망인의 일일수입 손해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먼저 위 보고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총화계통 추출방법에 의하여 추출된 표본사업체를 대상으로 그 직종별 임금 등을 조사한 것이어서, 망인의 근무지가 읍지역에 소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위 보고서상의 소득금액이 망인의 수입실태를 반영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다음 이 사건 사고 당시 룸살롱 마담이었던 망인의 경우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게 될 가능성이 다른 직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아야 하며, 실제 망인은 룸살롱 마담으로 근무하기 직전까지 도시지역인 김해시 [redacted] 아파트 101동 1404호에 거주하였던 데다가, 사



고 당시까지도 그 곳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그대로 두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망인은 룬살롱 마담으로서의 가동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적어도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와 같은 정도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일실수입액의 계산

위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와 같이 월 5/12분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할인법에 따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일실수입 손해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148,177,273원이 된다(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의 기간은 일실수입이 적은 기간으로 넘기고 마지막 월 미만의 기간과 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이하 같다).

(가) 사고일인 1996. 12. 7.부터 2000. 1. 6.까지 37개월간

$$905,872 \times 2/3 \times 34.3441 = 20,740,905$$

(나) 2000. 1. 7.부터 50세가 종료되는 무렵인 2018. 6. 6.까지 221개월간

$$1,028,033 \times 2/3 \times (174.9319 - 34.3441) = 96,352,598\text{원}$$

(다) 2018. 6. 7.부터 60세가 되는 무렵인 2027. 6. 6.까지(108개월)

$$45,031 \times 22\text{월} \times 2/3 \times (221.9961 - 174.9319) = 31,083,770\text{원}$$

(라) 합계 : 148,177,273원[= (가) + (나) + (다)]

나. 장례비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의 장례비로 2,500,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나. 과실상계



(1) 원고의 책임비율 : 60%(위 제1의 다.항 참조)

(2) 계 산

(가) 망인의 일실수입 : 88,906,360원(= 148,177,273 x 60%, 10원 미만은 버림)

(나) 장례비 : 1,500,000원(= 2,500,000 x 60%)

다. 위자료

(1) 참작 사유

망인의 나이와 직업,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 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망인의 과실 정도,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가) 망인 : 15,000,000원

(나) 피고 : 8,000,000원

라. 상속관계

(1) 상속재산 : 103,906,360원

(내역 : 일실수입 88,906,360원 + 위자료 15,000,000원)

(2) 피고의 상속분 : 103,906,360원

(피고와 망인의 아버지인 위 [REDACTED]은 망인의 위 상속재산을 각 2분의 1씩 공동 상속하였다가, 다시 위 [REDACTED]의 사망과 그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의하여 피고가 위 [REDACTED]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다.)

마. 소결론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113,406,360원(= 상속분 103,906,360원 + 장례비 1,500,000원 + 위자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1996. 12. 7.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03. 6. 1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겠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위 금원 부분에 한정되고, 이를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홍복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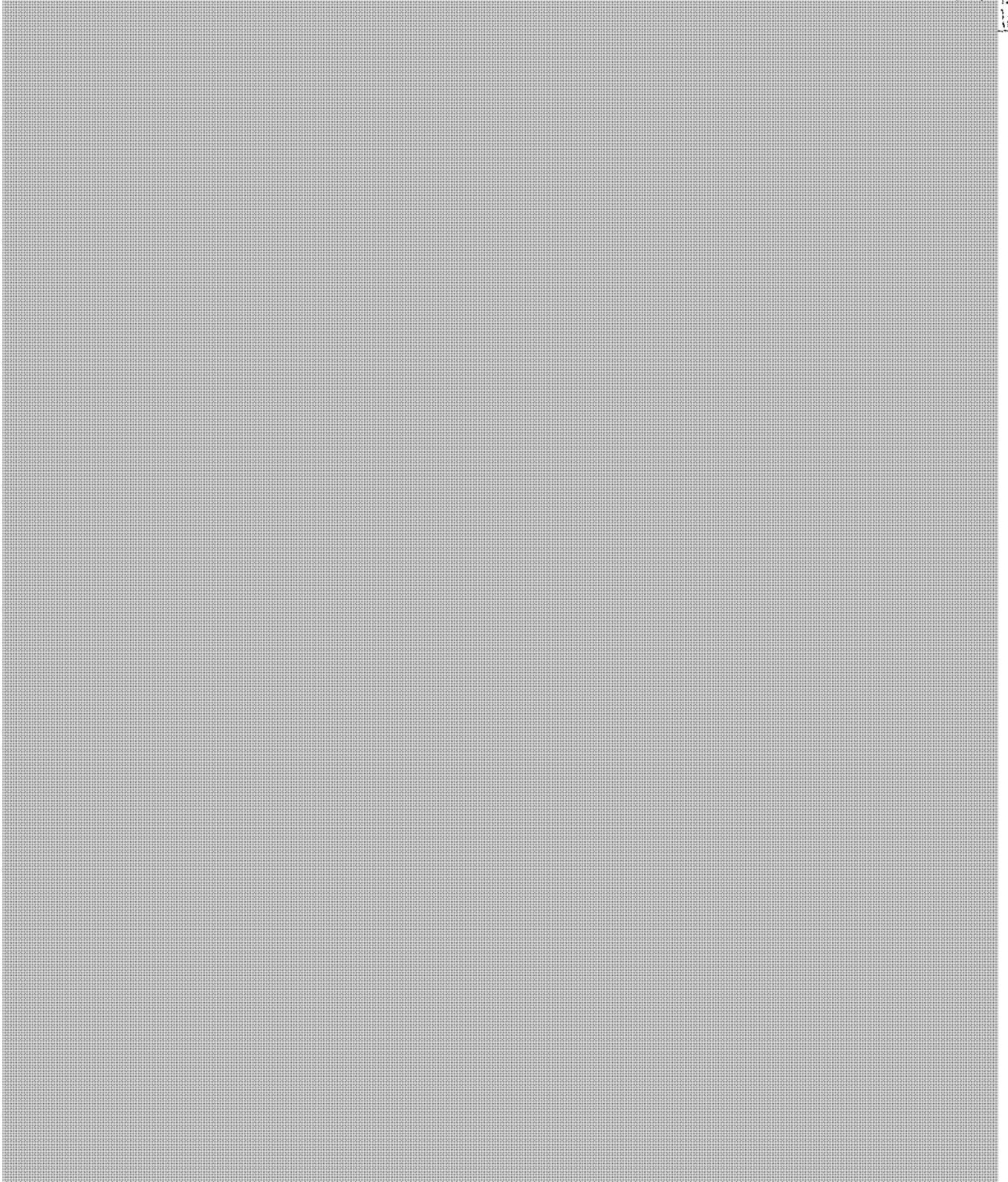
 판사 이정석 _____

 판사 심우용 _____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3-05-03



민소 162③